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8
----------	------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곽동환 의원, 박영동 의원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나. 장애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다.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라. 장애예술인 활동 수행사무의 위탁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행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2.9.27., 일부개정, 2023.3.28. 시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제15조의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예술인차별금지법)(2021.7.27. 일부개정, 2023.1.28. 시행)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